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7
----------	-------

발의연월일 : 2018. 5. 30.

발의자 : 주승용 · 이찬열 · 김수민

윤영일 · 이용호 · 김관영

이개호 · 강창일 · 최도자

이동섭 · 김삼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의 침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에 의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

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뭄 등”을 “가뭄, 홍수, 폭염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 중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을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u>가뭄 등</u>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u>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u>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p> <p>4. · 5. (생 략)</p>	<p>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 -----<u>가뭄, 홍수, 폭염 등</u>-----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적극 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u>----- 4. · 5. (현행과 같음)</p>